

전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재나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A대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티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나연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16.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10615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0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113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0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113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85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2016나1061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5.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0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113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002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2. 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2021. 2.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 증인인 L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그 후 L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은 L의 위증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의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을 제42호증의 12 각 기재에 의하면, L가 별지 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2018. 8.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전주지방법원 2018고약4126 위증,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018. 9. 4.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9. 12.자 상고이유보충서 제1면, 2019. 7. 23.자 상고이유보충서 제5면에서 ‘L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21. 2. 4.자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나 종중의 실체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